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1

2017. 11. 28. 기 획 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7일,

김정태,김창수의원(찬성의원 12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11. 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 서울시 출연·출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보고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 회에는 출연·출자 기관의 예산 및 결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시장이 출연·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 및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서울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서울시(이하 "시")는 현재 17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음¹)(참고자료 1).
- 각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의 범위에 따라 그 조직규모와 예산이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의료원과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서울교통공사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외. 시의 유일한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는 현재 출연기관 전환중.

세종문화회관 등 자체수입이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정을 시의 출연금과 시와 맺은 위탁사업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음.

- 현재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정원규모는 모두 3,836명이며, 2017년 전체예산규모는 7,7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시의 출연금은 2.925억원임.
- 매년 약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17개 출자·출연기관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등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의무화(안 제22조의2 신설)

- 안 제22조의2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받은 시장이 이를 지체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이는 사실상 시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을 비롯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해 해당 기관 및 시의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법 제4조제3항은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은 예산·결산서의 시의회 보고 절차 의무화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있다고 보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지도 않음.
- 다만, 법 제3조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경영효율 성을 보장하고 있고, 예산편성이나 결산의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적합성을 별도로 판단할 여지는 있음.
- 법 제18조는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성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 제19조는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 제18조와 제19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권을 구분함.
- 예산의 경우 예산성립이나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보고된 예산이 법령이나 회계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정명령권한까지 보장하고 있음.
- 반면,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단순히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통제권한의 수준을 구분한 것은 예산에 대한 사전통제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산의 경우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산서와 결산서의 시의회 제출 주체는 시장보다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예산서와 결산서의 보고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예산서와 결산서를 각각 보고와 제출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 보고도 법의취지를 살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V . 토론요지 : 「없음」
-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2231

제안년월일: 2017년 11월 28일 제 안 자: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보호하고, 예산과 결산서의 의회 보고가 법령에 따른 의무조치가 아니어서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고, 제출 의무자도 법령과 맞도록 해당 기관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성립·변경 후 15일 이내에 소관상임위원 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22조의 2제1항).
- 나.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2 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보고)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 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지체 없이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 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 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원안	개정안
<u><</u> 신설>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u>보고</u>) 시장은 법 제18조 제2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
	<u>항 및 제19</u> 조에 따라 출자·출	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산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 소	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
		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
		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